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주식회사 성희
소유물건(2024타경1538)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창현

감정평가서번호: 240208-A115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창성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박창준

(인)

감정평가액	이십사억구천오백일십만삼천일백삼십원정 (₩2,495,103,13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창현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경매8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성희 (2024타경1538)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2.16	2024.02.08 ~ 2024.02.16	2024.02.16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402.25	토지	402.25	-	1,054,023,450
	건물	774.32	건물	774.32	-	1,412,359,680
	제시외 건물	(28.6)	제시외 건물	(28.6)	-	28,720,000
합계					₩2,495,103,13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소재 "괴정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 건임.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3.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조건 없음.

4. 감정평가방법

- (1)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규칙,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평가하였음.
- (2) 본건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출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3) 본건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건물가액을 산출하였으며, 건물의 경우 거래사례가 포착되지 않는 등 거래사례비교법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4년 02월 16일자임.

6. 실지조사 .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지조사 착수일은 2024년 02월 08일자 이고, 가격조사 완료일은 2024년 02월 16일자로 귀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7. 그 밖의 사항

- (1) 본건 토지 기호(2)는 수인의 공유 지분 토지 중 『주식회사 성회』 지분만의 평가로서, 그 지분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단가에 전체면적에 지분 비율을 승한 지분면적으로 사정평가하였음.
- (2) 본건 토지 기호(2)는 지목이 "도로"로서 현황 "도로"로 목측되며 정확한 경계는 정밀 측량 요망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3) 본건 기호(3) 건물 중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확장발코니 등은 본건 건물 단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4) 본건 기호(3)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5층, 옥탑층 소재 제시외건물(ㄱ,ㄴ)은 개략적으로 실측 사정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대상 부동산의 개요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27-3, 127-28						
토 지	기호	지번	지목	면적 (㎡)	용도지역	2023년 개별공시지가(원/㎡)
	1	127-3	대	397.8	2종일주	782,900
	2	127-28	도로	4.45 (지분)	2종일주	249,800
	합 계			402.25		
건 물	기호	구조	연면적(㎡)	용 도	층 수	사용승인일
	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74.32	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5층	2021.04.23
	합 계			774.3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토지가액 산출

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함.

2. 비교표준지 선정

(1) 선정 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함.

(2)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대전광역시 서구)

(공시기준일 : 2024. 01. 01)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	갈마동 1345	대	201.5	단독 주택	2종 일주	세각 (가)	정방형 평지	990,5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대전광역시 서구 주거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3.12.01 ~ 2023.12.31	0.162	2023년도 12월
누 계 (2024.01.01 ~ 2024.02.16)	0.246	(1 + 0.00162 × 47/31) ≒ 1.00246
※ 2024년 01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2023년 12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4.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1.00
결정 의견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동일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맹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

기호/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0.97	1.00	1.00	0.92	1.00	1.00	0.89
결정 의견	본건은 표준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상태 등), 획지조건(형상 등) 열세함.						
2/㉠	0.97	1.00	1.00	0.92	1.00	0.33	0.29
결정 의견	본건은 표준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상태 등), 획지조건(형상 등), 기타조건(현황 도로 등)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2004.05.14.선고 2003다38207판결)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과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2) 가격자료

①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평가목적 (매매사례)	기준(거래)시점
①	갈마동 1***	대	2종일주	2,950,000	경매	2023.11.07
②	괴정동 1**-4*	대	2종일주	2,860,000	경매	2023.10.13
③	갈마동 1***	대	2종일주	2,450,000	담보	2023.06.20
④	갈마동 9**	대	2종일주	2,954,545	실거래	2022.11.15

▶ 자료출처(평가사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 자료출처(실거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②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용도지역	주위환경	표준적 이용	접면 도로	시세수준(원/㎡)	비고
2종일주	주택지대	주거용	세로 (가)	2,500,000 ~ 3,300,000 내외 호가	실거래가자료 및 현장조사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보정치 산정

① 산식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평가}}{\text{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 \frac{\text{사례가격}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② 사례 선정

선정 사례	사례 ①
선정 의견	상기 인근 사례 중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표준지와 비교성이 있는 상기사례를 선정하였음.

③ 표준지㉠ 격차율 산정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m ²)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m ²)	격차율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m ²)						
사례 ①	2,950,000	1.00	1.00531	1.00	1.00	2,965,665	2.99
㉠	990,500	1.00	1.00246	1.00	1.00	992,937	
사정보정	별도의 사정개입 포착되지 않음.						
시점수정	대전광역시 서구 주거지역 : 2023.11.07 ~ 2024.02.16						
지역요인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대체로 유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표준지㉠ : 2.99
결정 의견	상기에서 산정한 격차율과 본 건 인근의 지가수준, 거래사례, 평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향 보정함.

7. 토지 시산가액 산정

(1) 토지 단가 산정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990,500	1.00246	1.00	0.89	2.99	2,642,304	2,640,000
2	990,500	1.00246	1.00	0.29	2.99	860,975	861,000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사정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1	397.8	2,640,000	1,050,192,000	-
2	4.45	861,000	3,831,450	지분
합계	402.25	-	1,054,023,45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개요

평가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사례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평가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결정되는 가액임.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m ²)	평가목적 (매매사례)	기준(거래)시점
④	갈마동 9**	대	2종일주	2,954,545	실거래	2022.11.15

2.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거래사례 ④	평가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내 소재하는 사례로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사항 및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 등 본건과 비교 유사성이 높은 거래사례를 선정함.

3. 사정보정

사정보정치	1.00
결정 의견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 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점수정

구 분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
대전광역시 서구 주거지역	2022.11.15 ~ 2024.02.16	0.862	1.00862

5. 지역요인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1.00
결정 의견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6. 개별요인비교

기 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④	0.97	0.96	1.00	0.96	1.00	1.00	0.89
결정 의견	본건은 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상가와의 접근성 등), 획지조건(형상 등) 열세함.						
2/④	0.97	0.96	1.00	0.96	1.00	0.33	0.30
결정 의견	본건은 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상가와의 접근성 등), 획지조건(형상 등), 기타조건(현황 도로 등)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토지 단가 산정

기호	거래단가 (원/m ²)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m ²)	결정단가 (원/m ²)
1	2,954,545	1.00	1.00862	1.00	0.89	2,652,211	2,650,000
2	2,954,545	1.00	1.00862	1.00	0.30	894,003	894,000

8.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사정면적(m ²)	단가(원/m ²)	감정평가액(원)	비 고
1	397.8	2,650,000	1,054,170,000	-
2	4.45	894,000	3,978,300	지분
합계	402.25	-	1,058,148,3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토지가액의 결정

1. 각 방법 의한 시산가액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비 고
토지	1,054,023,450원	1,058,148,300원	-

2. 토지가액의 결정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지지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가액으로 결정함.

기호	사정면적(m ²)	단가(원/m ²)	감정평가액(원)	비 고
1	397.8	2,640,000	1,050,192,000	-
2	4.45	861,000	3,831,450	지분
합계	402.25	-	1,054,023,45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건물가액 산출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음.

2. 재조달원가의 산정

(1)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2022년 1월 기준)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원/㎡)	내용연수
01-05-05-09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2	1,741,000	50 (45~55)
01-05-05-07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오지기와	2	1,749,000	50 (45~55)
03-01-05-09	점포및상가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2	1,401,000	50 (45~55)

(2) 부대설비 보정

설비의 종류	설비내역 및 용도	보정단가
전기설비	기본적인 건축설비	재조달원가에 포함하여 결정하였음
난방설비	기본적인 건축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일반적인 위생설비 등	
기타설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재조달원가 산정

상기에서 제시된 재조달원가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등을 고려하되, 공사비용 및 마감자재의 수준, 기본 설비의 사양 등 건축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하되 일반적인 부대설비는 재조달원가에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기 호	구 조	용도	층수	재조달원가(원/㎡)
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상 5층	1,900,000

3. 감가수정 및 건물단가 결정

(1) 감가수정 방법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을 적용하였음.

(2) 잔존 내용연수 결정

기 호	사용승인일자	총 내용연수	경과연수	잔존 내용연수	비 고
3	2021.04.23	50	2	4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건물단가 결정

기 호	용 도	재조달원가 (원/m ²)	잔존 내용연수	총 내용연수	적용단가 (원/m ²)	비 고
3	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00,000	48	50	1,824,000	지상 5층

4. 건물가액 결정

기 호	사정면적(m ²)	단가(원/m ²)	감정평가액(원)	비 고
3	774.32	1,824,000	1,412,359,680	-
합계	774.32	-	1,412,359,68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I.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구 분	면적(m ²)	단가(원/m ²)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402.25	-	1,054,023,450	기호(1,2)
건 물	774.32	1,824,000	1,412,359,680	기호(3)
제시외 건물	(28.6)	-	28,720,000	기호(ㄱ,ㄴ)
합 계			2,495,103,130	-

2. 결 정 의 견

상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평가액 및 원가법에 의한 건물의 평가액으로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27-3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397.8	397.8	2,640,000	1,050,192,000	
2	동소	127-28	도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 8.9x- 2	4.45	861,000	3,831,450	주식회사 성희 지분
3	동소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53-13	127-3 위지상	다가구주택 (17가구),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5층 1층 2층 3층 4층 5층	18.28 193.45 193.45 178.02 191.12	774.32	1,824,000	1,412,359,680	1,900,000 x 48/50
소 계								₩2,466,383,130	
ㄱ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27-3 위지상	창고 등	판넬조 판넬지붕 5층소재	(5.1)	5.1	식	920,000	실측사정
ㄴ	동소	상동	계단실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래브지붕 옥탑층소재	(23.5)	23.5	식	27,800,000	실측사정
소 계								₩28,720,000	
합 계								₩2,495,103,130.-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소재 "괴정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빌라, 각급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삼각형 평지로서 다가구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도로로 목적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측으로 세로에 접함.
기호(2) : 본건이 현황 도로로 목적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기타 :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으로서
 외벽 : 외장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공부상 1층은 계단실, 2~4층은 다가구주택, 5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임.

(3) 설비내역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지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ㄴ)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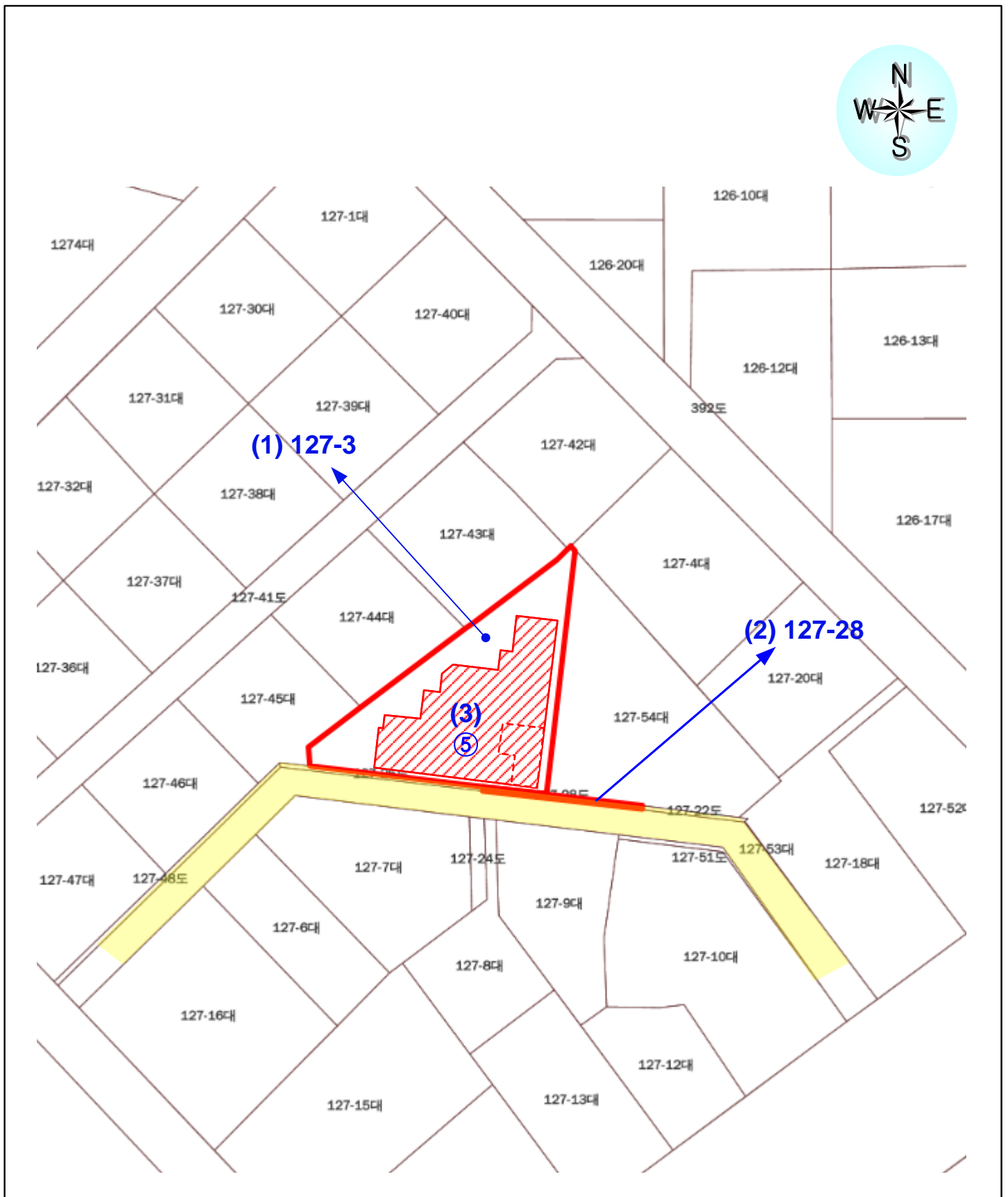
위 치 도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27-3, 127-2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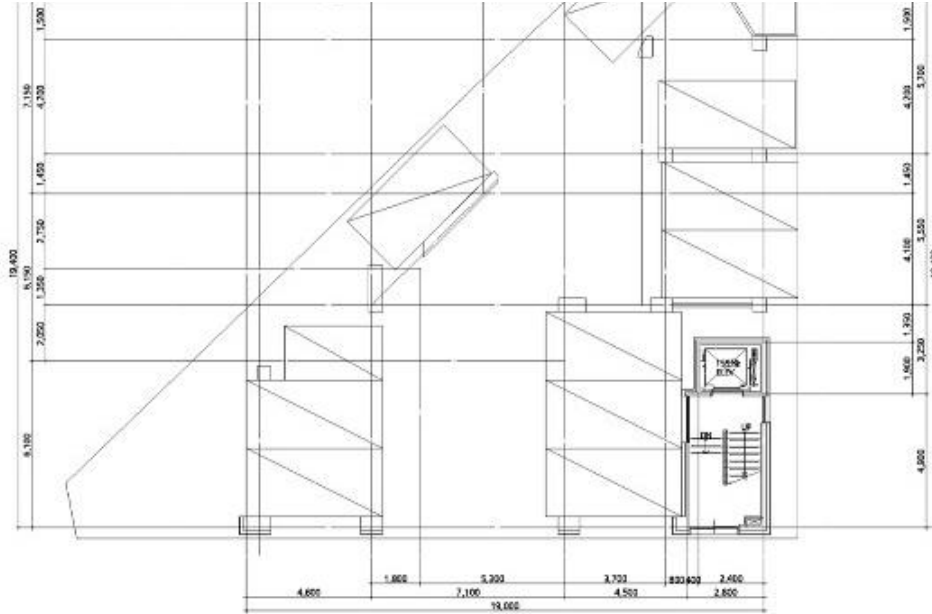


지 적 및 건물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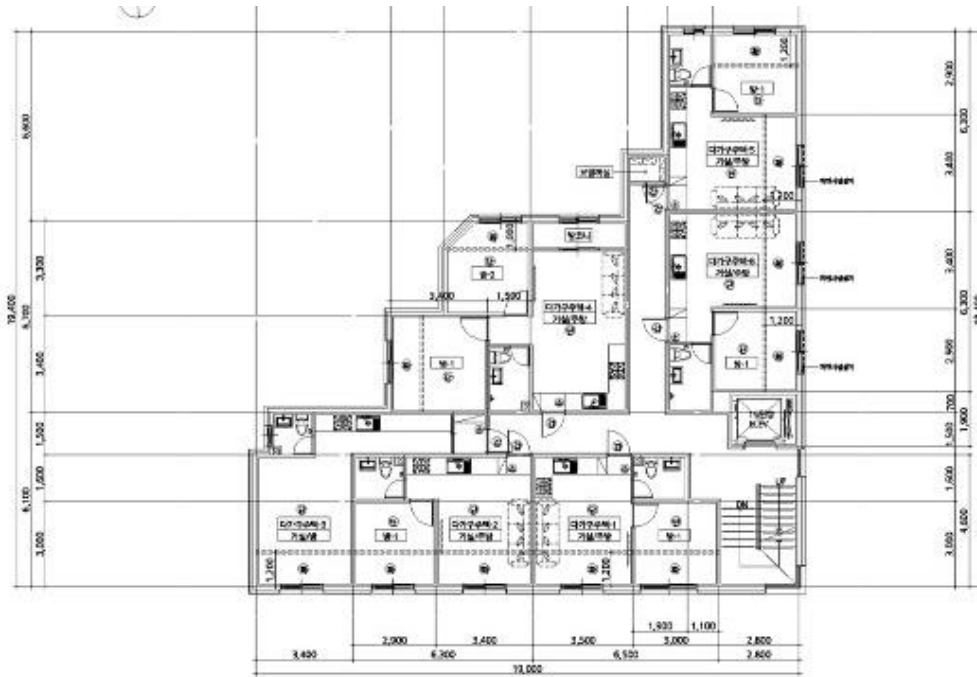


건물개황도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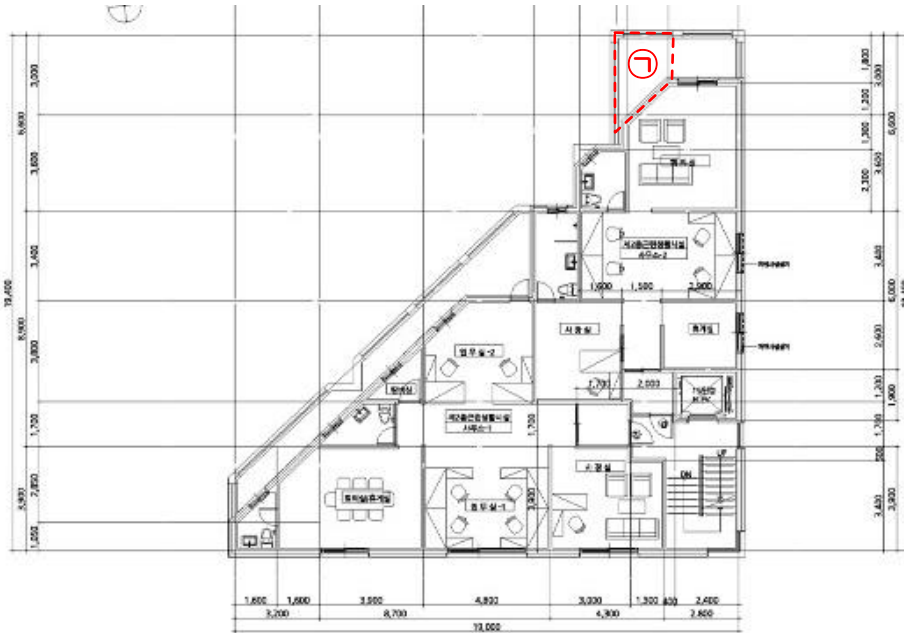
기호 (3) 1층
공부면적 : 1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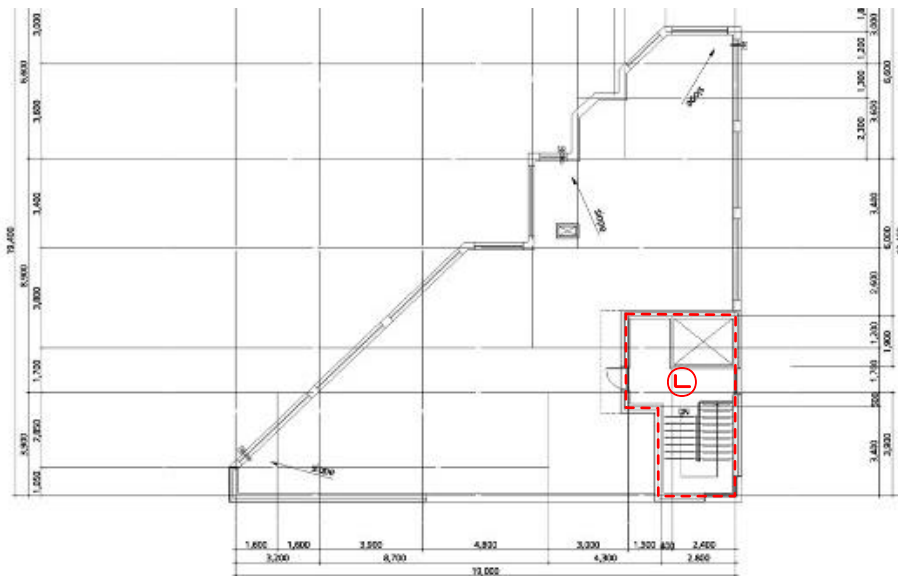
기호 (3) 2층
공부면적 : 193.45㎡

건물개황도

NO SCALE



기호 (3) 5층
공부면적 : 191.12㎡



기호(3) 옥탑층

【제시외 건물현황】

- ㉑ 판넬조 판넬지붕 5층소재 (창고 등) 약 5.1㎡
- ㉒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옥탑층소재 (계단실 등) 약 23.5㎡





1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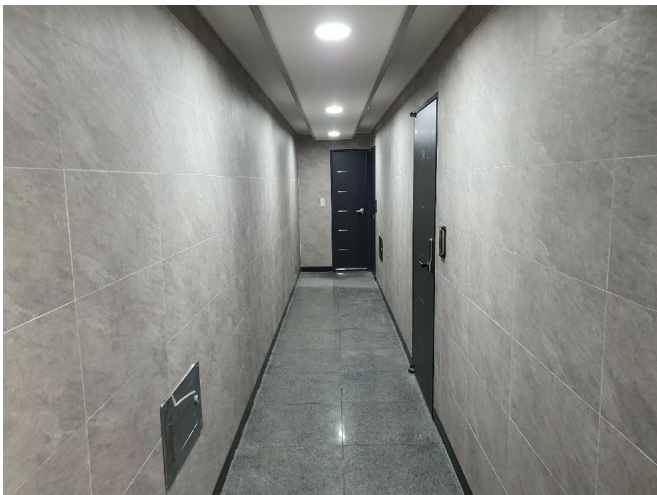
2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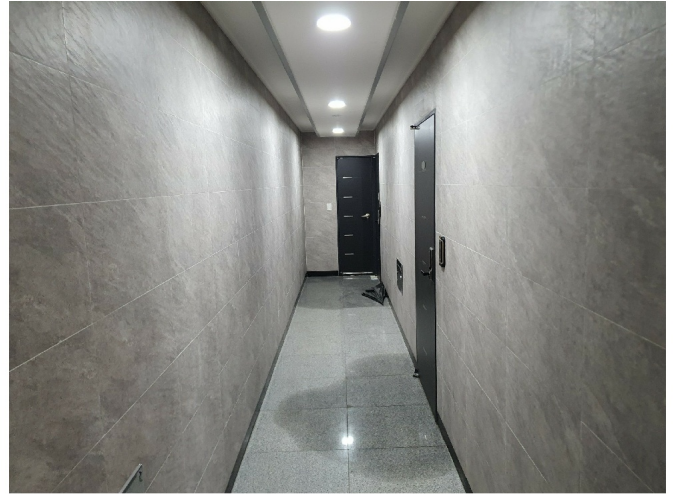
3



4



4



4



5



(2)

